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「근로복지기본법」을 명시하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, 타지역 주민과의 사용료 차등화를 통해 구미시 전입을 유도하고 구미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 추가

나. 사용료의 감면(안 제17조) : 관내 전입 근로자 신설

다. 별표 시설 사용료(안 제16조) : 관외 요금 신설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장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”을 “공사 또는 비영리단체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구미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12조의1을 제12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12조의1)의 제목 “의1 (사용제한)”을 “(사용제한)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4호(종전의 제13호) 중 “제11호”를 “제13호”로 한다.

12. 관내 전입 근로자 : 1과목 1개월 면제 (단,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) 제17조제12호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]

시설 사용료(제16조 관련)

□ 체육시설

시설명	장소 및 사용구분		사용자	사용료		비고	
				관내/ 관내사업장 근로자와 그 가족	관외		
근로자 문화 센터 및 근로자 종합 복지 회관	수 영	월회원	일 반 인	60,000원	70,000원		
			청 소 년 • 군인	50,000원	60,000원		
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42,000원	52,000원		
		일 일 회 원	개 인	일 반 인	3,500원	5,000원	
				청 소 년 • 군인	3,000원	4,500원	
	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2,500원	4,000원	
			단 체	일 반 인	3,000원	4,500원	
				청 소 년 • 군인	2,500원	4,000원	
	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2,000원	3,500원	
	아쿠아 로빅	월회원	일 반 인	60,000원	70,000원		
			청 소 년 • 군인	50,000원	60,000원		
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42,000원	52,000원		
	헬 스	월회원	일 반 인	42,000원	50,000원		
			청 소 년 • 군인	36,000원	45,000원		
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24,000원	40,000원		
		일일회원	일 반 인	3,000원	4,000원		
			청 소 년 • 군인	2,500원	3,500원		
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2,000원	2,500원		
	방송 댄스 다이어트 댄스 요가 필라테스	월회원	일 반	36,000원	42,000원		
	요 가	월회원	일 반	36,000원	42,000원		
	탁 구	월회원	일 반	삭제			
		일일회원		(탁구시설을 GX룸으로 변경)			

※ 시설 사용료는 1일 1회 3시간 기준으로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불가하며
강습시간은 종목별로 상이하다.

※ 위 종목 외 체육, 문화, 청소년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
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.

※ 사용일수 조정 시 기준금액 내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*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·비속으로 한다.

□ 문화강좌 시설

시설명	프로그램 명	수강료
근로자 문화센터	문화 웰빙 강좌	10,000원 ~ 50,000원
• 위 수강료는 월단위 수강료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~주5회 기준임 •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• 재료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.		

□ 기타시설

시설명	장 소		사용기준	기 본 사용료	비 고
근로자 문화 센터	기본 시설	강 당	평일주간 1회 (4시간이내)	60,000원	• 4시간이상 초과시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%가산한다. • 토요일,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%를 가산한다.
		야 외 무 대	”	30,000원	•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%를 가산한다.
	부대 시설	냉·난방 (강당)	• 냉방 1회 (4시간이내) • 난방 1회 (4시간이내)	40,000원	•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10,000원을 가산한다.

※ 주간사용은 09:00 ~ 18:00 운용시간 중 “4시간” 이내 사용금액임.

※ 야간사용은 18:00 ~ 22:00까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	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,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위하여 「근로
			-----	복지기본법」 제28조에 따라 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제5조(운영) ①	센터 및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전문적 관리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	제5조(운영) ①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
			-----	다)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공사 또는 비영리단체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② ~ ⑤ (생략)	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제7조(수탁관리자의 의무) ① (생략)		제7조(수탁관리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수탁관리자는 구미시 관내 노동단체 및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관리 및 운영에 적		② ----- 시 -----		

정을 기하여야 한다.	-----.
③・④ (생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<u>제12조의1(사용제한)</u> ①・② (생략)	<u>제12조의2(사용제한)</u>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.	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2. 관내 전입 근로자 : 1과목 1개월 면제 (단,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)</u>
<u>12.</u> (생략)	<u>13.</u> (현행 제12호와 같음)
<u>13.</u> 제3호부터 <u>제11호</u> 까지의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	<u>14.</u> ----- <u>제13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·사업주·노동조합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유 태 란
	팀 장	-
	담 당 자	박 현 정 (480-6207)